



SEOU ACCOUNTING AND CONSULTING COMPANY LIMITED

NEWSLETTER

Quarter 1, 2026

Hanoi, Vietnam

Table of Contents

법인세법 개정	3
Circular No. 20/2026/TT-BTC issued by Ministry of Finance	3
Decree No. 141/2026/NĐ-CP dated 29 April 2026.....	6
부가가치세 개정	7
Decree No. 359/2025/ND-CP dated 31 December 2025.....	7
Decree No. 144/2026/ND-CP dated 5 May 2026	8
개인소득세 개정	10
개인소득세법 제 109/2025/QH15 호. 시행령 초안(Draft Decree)	10
Law No. 09/2026/QH16	11
OTHERS	11
Decree 161/2026/ND-CP- 기준급여(Base Salary Level) 관련 변경	11
Resolution No. 66.16/2026/NQ-CP(April 7, 2026)- 개인소득세관련(Decision 1109/QĐ-BTC). .	12
OFFICIAL LETTER	13
2026 년 1 월 20 일 동나이 세무국(Dong Nai Tax Department)이 발행한 부동산 양도 관련 해석에 관한 공문 제 1046/DON-QLDN1.....	13
2026 년 2 월 4 일 자 떠이닌 세무국(Tay Ninh Tax Department) 발행 공문 제 654/TNI-QLDN1 호: 급여 지급 관련 손금산입 가능 비용에 관한 세무 지침.....	13

Department of Tax, Fee and Charge Policy Management and Supervision 이 2026 년 1 월 12 일 발행한 공문 제 69/CST-GTGT 호는 카사바 부산물(카사바 펄프) 제품 및 일반 농산물에 적용되는 2026 년 이후 부가가치세(VAT) 세율:.....13

Dong Nai Tax Department 가 2026 년 4 월 13 일 발행한 무상 재화 및 용역 계산서 관련 Official Letter No. 5338/DON-QLDN1.14

법인세법 개정

Circular No. 20/2026/TT-BTC issued by Ministry of Finance

2026 년 3 월 12 일 개정, 2025 년 사업년도 부터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법인세(CIT) 규정의 대체 및 폐지

본 시행규칙은 기존의 중요한 두 개의 시행규칙인 Circular No. 78/2014/TT-BTC 및 Circular No. 96/2015/TT-BTC 를 전면 대체함으로써 법인세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경과규정 기간 동안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손금산입 비용 중, Circular 96/2015/TT-BTC 에서 요건 및 증빙서류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2025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계속하여 Circular 96/2015/TT-BTC 를 적용합니다.
- 본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Circular 96/2015/TT-BTC 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손금산입 비용의 경우, 2025 사업연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없는 임대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또는 배분비용은 기업의 적법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본 시행규칙상의 비현금 결제증빙 및 자본양도 관련 규정은 Decree No. 320/2025/ND-CP 의 시행일(2025 년 12 월 15 일)부터 적용됩니다.

2. 손금산입 비용 증빙요건의 강화 및 세분화

Circular 20/2026/TT-BTC 제 3 조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비용에 대한 증빙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이 일반적인 원칙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새로운 규정은 비용 유형별로 보다 상세한 증빙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금산입 비용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로 입증되어야 하며, 각 개별 사례에 따라 적절한 추가 입증자료(supporting files)를 함께 구비하여야 합니다.

3. 특정 경우 과세소득 인식시점에 대한 명확화

「Circular 20/2026/TT-BTC」 제 5 조는 특정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CIT) 과세매출 인식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화는 매출 인식 시점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형별 매출 인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재화: 수출계약상 소유권 이전 시점. 계약서에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 관련 세관 규정에 따름.
 - 항공운송 서비스: 고객에 대한 운송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
 - 건설 및 설치 활동(조선 포함):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공사 항목 또는 완성 부분의 검수 및 인도 시점.
 - 전기 및 수도 공급: 전기/수도 요금 청구서상 계량기 검침 확인일.
- 베트남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도거래에 대한 과세매출 인식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자본 양도: 자본 소유권 이전 시점.
 - 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 양도거래 실행일.
 - 파생증권(선물계약) 양도: 증권거래소 시스템상 주문 체결 시점 또는 계약 만기일.

4. 외국인 계약자(Foreign Contractor)의 납세의무 확대 및 명확화

「Circular 20/2026/TT-BTC」 제 7 조는 기존 「Circular 78/2014/TT-BTC」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최근의 새로운 사업 형태를 중심으로 외국인 계약자의 납세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

베트남 내에서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관계없음)은 법인세(CIT)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그룹 내부 구조조정:

최종 모회사의 변경이 없고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장부가액 유지 및 의무 승계 등)을 충족하면 그룹 내부 지분구조 재편 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사례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 세액 계산 방식:

법인세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과세매출 × 간주이익률(%)

법인세 목적상 과세매출은 외국인 계약자 및 외국 하도급업자가 얻는 총 매출액이며, 납부세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베트남 측이 외국인 계약자 또는 외국 하도급업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도 법인세 과세매출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상 각 활동별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 가장 높은 적용 세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증설 투자자본 및 과학기술개발기금(S&T Fund)에 관한 추가 규정

「Circular 20/2026/TT-BTC」는 증설 투자자본 관리 및 과학기술개발기금(S&T Fund)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투명성과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설 투자자본 등록:

기업은 증설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본 규모를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법인세 확정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세무당국이 증설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있는 경우)을 모니터링하고 검증·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과학기술개발기금(S&T Fund)으로 형성된 자산의 처리:

과학기술개발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아직 전액 감가상각되지 않았으나 이후 생산 및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미상각 잔액은 기타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동시에 해당 잔존가액에 대해서는 계속 감가상각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금액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Decree No. 141/2026/NĐ-CP dated 29 April 2026

본 시행령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정책을 규정한 시행령 제 68/2026/NĐ-CP 호와, 법인세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를 상세히 규정한 시행령 제 320/2025/NĐ-CP 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내용입니다.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 141/2026/NĐ-CP 호의 주요 세무정책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기준 매출액을 연간 10 억 VND 로 상향 조정

Decree No. 141/2026/NĐ-CP 제 1 조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정책 및 세무행정을 규정한 Decree No. 68/2026/NĐ-CP 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Decree No. 68/2026/NĐ-CP 의 다음 조항들에서 “VND 500 million” 이라는 문구를 “VND 1 billion”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 3 조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제 4 조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제 8 조 제 1 항,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3 항, 제 12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17 조 제 4 항, 제 18 조 제 3 항, 즉, 기존 연간 매출 기준금액인 5 억 동이 10 억 동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2. 기업의 비과세 소득 기준이 연간 10 억 동(VND 1 billion/year)으로 상향됨.

Decree No. 141/2026/NĐ-CP 제 2 조는 법인세 면세소득과 관련하여 Decree No. 320/2025/NĐ-CP 제 4 조 제 15 항을 추가·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및 조직 중 연간 총매출액이 10 억 VND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CIT)가 면제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운영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

$$\text{직전 과세기간의 총매출액} = \frac{\text{과세기간의 총 실제 매출액}}{\text{과세기간 중 기업이 실제로 생산 및 사업활동을 수행한 개월 수}} \times 12$$

- 직전 과세기간 중 어느 월에 기업이 신규 설립되거나, 기업 형태 전환, 소유 형태 변경, 합병, 통합, 분할 또는 분리된 경우: 운영기간은 월 단위 전체 기준(full-month basis)으로 산정합니다.

- 과세기간 중 신규 설립된 기업으로서 예상 총매출이 10 억 동(VND 1 billion)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인세(CIT) 예정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 시 실제 총매출이 10 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 및 확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연간 매출액이 10 억 동 이하인 기업 및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매출액이 10 억 동 이하라고 스스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68/2026/NĐ-CP」에 따라 개인소득세(PIT) 및 부가가치세(VAT)를 신고·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된 세액은 「시행령 제 68/2026/NĐ-CP」 제 12 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인, Decree No. 141/2026/NĐ-CP 3 조,

- 기업이 2026 년 1 분기에 법인세를 잠정 납부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이 연간 VND 10 억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후 분기에 대한 잠정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과 납부된 세액은 세무관리법에 따라 상계, 환급 또는 국가예산 수입과의 환급·상계 처리됩니다.
- 2025 사업연도(FY2025)의 과세기간이 2026 년 1 월 1 일 이후에 종료되고, 기업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6 년 1 월 1 일부터 FY2025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FY2025 에 대한 법인세 면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FY2025 총 납부세액 ÷ 12 개월 (또는 2025 년에 신설된 기업의 경우 FY2025 실제 운영 개월 수)) × 2026 년도에 해당하는 FY2025 과세기간 개월 수

부가가치세 개정

Decree No. 359/2025/ND-CP dated 31 December 2025

이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부의 2025년 7월 1일자 시행령 제181/2025/NĐ-CP(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칙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ecree No. 359/2025/ND-CP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수준으로만 가공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에 대한 유통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VAT)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VAT) 신고 및 납부 불필요: 공제법(credit-invoice method)을 적용하는 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이 해당 상품을 다른 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에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매출 VAT 는 발생하지 않으나, 매입 VAT 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VAT 세율 5% 적용: 공제법을 적용하는 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이 해당 상품을 개인사업자(individual/household business) 또는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이 아닌 기타 조직 및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매출액 기준 간주 VAT 율 1% 적용: 유통 단계(trading stage)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직접법(direct method)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및 기타 사업조직에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중 일부조건 폐지 (202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Decree No. 181/2025/ND-CP 제37조 제3항 및 제39조 제3항 폐지: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발행된 송장에 대하여, 판매자가 해당 VAT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Decree No. 144/2026/ND-CP dated 5 May 2026

본 시행령은 2026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규정한 2025년 7월 1일자 시행령 제181/2025/NĐ-CP호(2025년 12월 31일자 시행령 제359/2025/NĐ-CP호에 따라 개정·보완된 내용 포함)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의 추가 규정(보완)

동 시행령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여러 사례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 인간의 생명·건강·농업·수산업 및 재보험 활동과 관련된 보험 서비스:
 - 생명보험, 건강보험, 학생보험 및 기타 사람과 관련된 보험 서비스
 - 가축보험, 농작물보험 및 기타 농업 관련 보험 서비스
 - 어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 보트, 장비 및 기타 필수 도구에 대한 보험
 -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재보험
 - 베트남 해역 또는 베트남과 인접·대항 연안국 간 공동개발협정 대상 중첩 해역에서 활동하는 외국 석유·가스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임차한 외국 국적의 석유시설, 장비 및 원유 저장선에 대한 보험
- 보험중개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수익
- 채권 거래 활동(신용기관 및 비신용기관 간 거래 포함)
- VAT 비과세 대상인 수출 천연자원 및 광물 목록 개정 (세부 내용은 시행령 제 144/2026/NĐ-CP 에 첨부된 부록 I 및 부록 II 참조)

2. 부가가치세 공제 규정 개정사항

「시행령 제144/2026/ND-CP」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VAT) 과세매출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개정 법률 제149/2025/QH15에 따라 수정·보완된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VAT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아닌 재화 및 용역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VAT 과세매출에 포함됩니다.

3. 특정 특수한 경우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관련 신규 규정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44/2026/NĐ-CP는 특정 특수한 경우의 비현금결제 증빙에 관한 규정인 제26조 제2항 g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지급기한일까지 비현금결제 증빙이 없어 매입부가가치세를 감액 조정한 경우라도, 이후 비현금결제 증빙을 확보하면 해당 증빙을 확보한 과세기간에 추가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Case	Guidance on VAT declaration and deduction treatment
계약상 지급기일 미도래	기업은 비현금 결제 증빙서류가 아직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 계약서 및 부가가치세(VAT) 계산서를 근거로 매입부가가치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임시 신고 및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비현금결제 증빙서류 부재	기업은 지급 증빙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존 공제받은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 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정은 계약서 또는 계약 부속합의서상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비현금 결제 증빙서류를 추후 확보하는 경우	기업은 비현금 결제 증빙서류를 확보한 과세기간에 해당 매입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신고하고 재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개정

개인소득세법 제 109/2025/QH15 호. 시행령 초안(Draft Decree)

개인소득세법 제 109/2025/QH15 호의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초안(Draft Decree)은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세 시행령 초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이점 / 주요 변경사항	시행령 초안 기준	현행 규정
사용자가 근무 중 또는 점심시간에 제공받는 식대(중식수당)	비과세 한도를 직원 1 인당 월 VND 120 만으로 제안	한도 없음

차이점 / 주요 변경사항	시행령 초안 기준	현행 규정
퇴직수당 및 실직수당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포함해 전액 과세소득에서 제외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노동법(제 98 조)에 따른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임금 전액 PIT 비과세	정상 주간근무 임금 대비 추가 지급분만 PIT 비과세
자발적 연금기금 납입금의 손금산입 한도 상향	직원 1 인당 월 300 만동	직원 1 인당 월 100 만동
근로계약이 없거나 3 개월 미만 계약자의 10% 원천징수 기준 조정	VND 300 만 이상부터 적용	VND 200 만 이상부터 적용
외화로 지급받은 과세소득 환산 시 적용 환율	납세자가 계좌를 보유한 상업은행의 매입환율 적용. 환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중앙환율 적용	기업이 계좌를 보유한 상업은행의 매입환율 적용

Law No. 09/2026/QH16

개인소득세법 제 109/2025/QH15 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이 2026 년 4 월 24 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차이점 / 주요 변경사항	법률 제 09/2026/QH16 호 개정·보완 규정에 따른 내용	법적 근거
개인사업자의 PIT(개인소득세) 비과세 매출 기준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의 연간 매출: PIT 비과세. 현재 기준은 연간 10 억 VND 이하	법률 제 09/2026/QH16 호 제 1 조, 법률 제 09/2026/QH16 호 시행령 제 141/2026/ND-CP 제 1 조

OTHERS

Decree 161/2026/ND-CP- 기준급여(Base Salary Level) 관련 변경

법정 기준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항목	현행 규정	2026년 7월 1일
법정 기준급여 수준	월 VND 2,340,000	월 VND 2,530,000

Resolution No. 66.16/2026/NQ-CP(April 7, 2026)- 개인소득세관련(Decision 1109/QĐ-BTC).

2026년 4월 7일 정부가 발행한 Resolution 66.16/2026/NQ-CP는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규정의 축소·간소화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2026년 5월 8일 Decision 1109/QĐ-BTC를 발행하여 조정이 필요한 서식 및 행정절차 목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에 따라 급여·임금 소득에 대한 월별 개인소득세(PIT) 신고서(Form No. 05/KK-TNCN) 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분기별 신고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각 신고 상황별로 현재 세무당국이 적용하고 있는 처리 방향에 대한 요약입니다.

시나리오 1 - 2026년 4월 PIT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26년 4월분에 대한 별도의 PIT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2026년 4월 발생 PIT는 2026년 제 2분기(4월~6월) PIT 신고서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2026년 제 2분기 PIT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31일입니다.

시나리오 2 - 2026년 4월 PIT 신고서를 이미 정상 제출한 경우

- 회사는 여전히 2026년 4월 발생 PIT를 5월 및 6월분 PIT와 함께 합산하여 2026년 제 2분기 PIT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세무당국 간 논의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현재 이미 2026년 4월 PIT 신고를 제출했거나 PIT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전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신고 또는 중복 납부 문제에 대한 추가 공식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OFFICIAL LETTER

2026 년 1 월 20 일 동나이 세무국(Dong Nai Tax Department)이 발행한 부동산 양도 관련 해석에 관한 공문 제 1046/DON-QLDN1.

정상적인 방식(수익, 비용)으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를 신고하는 기업이 부동산 양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각 양도 거래별 법인세 신고서(Form No. 02/TNDN)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해당 기업은 연간 법인세 확정신고서(Form No. 03/TNDN)만 제출하면 되며, 2020 년 10 월 19 일자 시행령 제 126/2020/NĐ-CP 제 8 조 제 4 항 d 호, e 호 및 제 6 항 b 호에 따라 분기별 잠정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026 년 2 월 4 일 자 떠이닌 세무국(Tay Ninh Tax Department) 발행 공문 제 654/TNI-QLDN1 호: 급여 지급 관련 손금산입 가능 비용에 관한 세무 지침.

직원이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개인에게 급여 수령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수임인의 은행계좌로 급여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CIT)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 관련 서류: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대장 등 충분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의 유효성: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계약서/위임장이 있어야 하며(공증 또는 관할기관의 인증 필요), 위임 범위, 양 당사자의 신원 정보 및 대리 수령 계좌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증빙: VND 5 백만 이상 지급 건에 대해서는 비현금 지급 증빙이 있어야 하며, 해당 증빙에는 관련 위임서에 근거하여 직원 대신 급여를 지급하는 것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수임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Department of Tax, Fee and Charge Policy Management and Supervision 이 2026 년 1 월 12 일 발행한 공문 제 69/CST-GTGT 호는 카사바 부산물(카사바 펄프) 제품 및 일반 농산물에 적용되는 2026 년 이후 부가가치세(VAT) 세율:

카사바 부산물(cassava residue, cassava pulp)은 카사바 전분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by-product)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VAT) 처리는 해당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카사바 부산물이 직접 생산한 조직 또는 개인이 판매하는, 추가 가공되지 않았거나 단순한 1차 가공만 거친 농작물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수입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non-VAT taxable)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업적 유통 단계 및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제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5% VAT 세율이 적용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카사바 부산물이 축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사료(animal feed)로 판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제 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Dong Nai Tax Department 가 2026년 4월 13일 발행한 무상 재화 및 용역 계산서 관련 Official Letter No. 5338/DON-QLDN1.

회사가 법령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을 증여, 기부 또는 제공하는 경우, Decree No. 123/2020/ND-CP 제 10조 제 6항 가목(Decree No. 70/2025/ND-CP 제 1조 제 7항 나목에 따라 개정·보완됨)에 따라, 해당 재화 및 용역의 총 가액에 대하여 하나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증여·기부 물품 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The above information is for reference only, not specific consulting advice.
For more detailed guidanc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our Office.*

SEO Accounting and Consulting Company Limited

Hanoi Head office: 10th floor, Charmvit Tower, No. 117 Tran Duy Hung, Yen Hoa Ward, Hanoi City

Tel: (+84) 24 3776 7049/50

Saigon branch: 14th floor, Citilight Building, No 45 Vo Thi Sau, Tan Dinh Ward, Ho Chi Minh City

Tel: (+84)-28-628-628-00